

山林法 施行規則 改正

山土地利用規制緩和

경관보존과 주요시설 보존을 위하여 산지이용 허가를 많이 제한하여 왔던것을 농어민의 편의제공과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지의 이용개발을 쉽게 할수 있도록 허가제한 사항을 대폭완화하고 신고로써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. 산림청은 이와관련한 규정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'89. 8. 1부터 시행키로 하였는데 주요개정골자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. -편집자-

內 容	現 行	改 善
山林毀損許可 制限緩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軍事施設과 國家 또는 公共機關, 敎育機關, 醫療機關 施設境界로부터 500m以內 ○文化財保護區域, 都市公園, 公園保護區域 寺院境內地 ○鐵道, 軌道, 道路, 運河, 河川, 湖水, 沼池, 祭壇 또는 家屋으로부터 100m以內 ○國道, 高速道路 및 鐵道沿邊 可視地域의 境遇 2km以內 ○墳墓에 있어서는 墓地으로부터 500 以內 (但, 緣故者의 同意를 받는 境遇에는 除外) ○名勝古蹟地, 觀光地 및 休養地等 景觀 및 國土保存區域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制限 廢止) ○他法에 依하여 制限하고 있는 地域(範圍 縮小) ○(制限 廢止) ○國道, 高速道路, 鐵道沿邊 및 定期航路로부터 可視距離 1킬로미터以內의 山林중 自然景觀保存을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市長·郡守가 告示한 地域(範圍 縮小) ○墓域으로부터 20미터 以內 다만, 緣故者의 同意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範圍 縮小) ○名勝地, 遺跡地, 休養地, 遊園地等 景觀保存上 市長·郡守가 告示한 地域
申告에 依한 山林毀損 擴大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送·配電施設, 通信線路 埋設 및 電柱設置 地下資源開發을 爲한 試錐事業 ○造林, 伐採를 爲한 施設, 林道, 放火線 其他 山林保護施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現行과 같음 ○造林, 伐採를 爲한 施設, 林道, 放火線, 其他 山林管理 및 保護施設의 設置(條文 整理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林産物 貯藏 또는 簡易 加工施設 ○木炭生産施設 ○農漁民이 100㎡ (30坪) 以內의 山林을 毀損하여 다음 施設을 하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農村近代化促進法에 依한 農家住宅 改良事業 • 農業機械化促進法에 依한 農業機械 保管施設 • 農幕, 家畜施設, 魚類貯藏施設 ○農漁民이 2,000㎡ (650坪) 以內 農路를 施設하는 경우 ○(新 設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林産物 簡易加工施設(條文整理) ○現行과 같음 ○農林漁民이 다음 各目的 1에 該當하는 다음 施設을 하는 경우(面積 制限廢止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現行과 같음 • 農林業機械 保管施設(條文整理) • 農幕, 農路, 畜舍 및 農林水産物의 貯藏施設(條文整理) ○(面積制限 廢止) ○山林所有者가 1ha (10,000㎡) 以內의 區域에서 林木의 伐採 및 林地의 開墾없이 山菜, 藥草, 特用作物, 觀賞樹 栽培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
--	---	--

保安林도 規制 緩和

보안림지정구역 저수지에서 2km이내를 1km로 축소 2ha미만의 소구역개발도 허용

- 山林廳은 第1種水源涵養保安林의 指定 基準을 貯水池로부터 2km以內로 指定하여 왔으나 林相이 좋아지고 地被物이 造成되어 水源涵養 機能이 向上되는 等 林地與件 變化를 勘案하여 이번에 山林法 施行規則을 改正하여 貯水池로부터 1km 以內로 縮小하므로써 山主의 不利益을 줄이고 經營意慾을 고취시키도록 하였다.
- 한편 水源涵養保安林에서는 皆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伐期令에 달하고 土砂流出 및 貯水機能에 支障이 없는 範圍內에서 1團地 伐區面積 2헥타以內의 小區域皆伐을 許容키로 하였다.

- 또한, 過去에는 許可를 받아야 할 수 있던 稚樹가꾸기, 가지치기, 덩굴除去 等 育林을 위한 施業은 山主의 任意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間伐施業에서는 落石 및 火災防備保安林을 除外하고는 弱度間伐以下만 許容하던 것을 強度間伐까지 許容하고
- 擇伐施業에서는 山林의 形態나 種類에 따라서 伐採方法, 伐採對象木, 伐採量等에 制限을 두고 있던 것을 一般山林과 같이 하도록 하는 等 保安林內 施業規制를 大幅 緩和하였다.